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www.AsiOgusto.org

참가신청안내

2013.10.1.(화) - 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최 : (사)슬로푸드문화원, 슬로푸드국제본부, 남양주시

주관 :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협중앙회, 한국관광공사

2013 AsiO Gusto



대회개요

주 제 : “슬로푸드, 맛으로 바꾸는 세상”
 슬로건 : “생산은 유기농, 밥상은 슬로푸드”
 기 간 : 2013.10.1 - 10.6 (6일간)
 장 소 :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

참가국 : 아시아, 오세아니아 40여개국
 주 최 : (사)슬로푸드문화원, 슬로푸드 국제본부, 남양주시
 주 관 :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
 후 원 :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농협중앙회, 한국관광공사



생산은
유기
싱
밥상은
로푸드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참가할 개인, 업체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남양주에서 열리는 '아시오구스토(AsiO Gusto)'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살로네델구스토(Salonedel Gusto)',
프랑스 푸르시에서 개최되는 '유로구스토(Euro Gusto)'와 더불어 2년마다 열리며
아시아 최초로 개최되는 세계 3대 슬로푸드 국제대회입니다.

'2013 아시오 구스토(AsiO Gusto)'는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즐기는 '맛의 향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나눔의 축제',
음식과 문화가 융합된 오래된 미래 가치를 제시하는 '신나는 축제'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맛있고, 즐겁고, 다양하고, 풍성한 맛의 세계!
2013년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에서 개최됩니다.

슬로푸드는 맛있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살리고 보호하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대회 참여로 귀 기업 및 단체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지길 바랍니다.

슬로푸드 맛으로 바꾸는 세상

누구나 맛있고 깨끗하며 공정한 음식을
누려야 한다고 믿는 것이 슬로푸드의 철학입니다.

good 몸에 좋은 맛있는 음식
누군가 생각하게 하는 음식
나누고 싶은 음식
좋은 기억을 주는 음식

clean 깨끗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음식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

fair 공정한 음식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배려하는 음식

참가분야

전시판매부스

- ① 국내전시관 (살내구간이며 유료관람구역)
전 시 관 : TFS TENT(대형텐트 살내)
3mX3mX2.5m(H) 조립부스, 독립부스
장소여건 : 공동급배수장 이용, LPG가스통 사용 불가
(휴대용 가스렌지 등 사용)
- ② 농부장터 (무료관람구역)
전시부스 : 3m X 3m MQ TENT
장소여건 : 야외, 공동급배수장 이용,
가스 사용 가능(신청자 설치)

식음판매부스

- ① 농부장터 먹거리광장 (무료관람구역)
판매부스 : 5m X 5m MQ TENT
장소여건 : 야외, 개별부스 급배수 가능(유료),
가스 사용 가능 (신청자 설치)
- ② 세계의 거리음식 (무료관람구역)
판매부스 : 3m X 3m MQ TENT
장소여건 : 야외, 공동급배수장 이용,
가스 사용 가능(신청자 설치)

전시 및 판매 품목

1차생산품 친환경유기농축수산물, 곡물류 등 **전통식품류** 김치, 절임류, 장류, 소금류, 식초 & 양념류 등
 축산가공품 유제품, 고기류, 축산가공류 등 **기능성건강식품** 기능성전통음료, 건강식품 등
 음료/차류/주류 전통주류, 와인, 전통차류 등 **향토제품** 지역특산 및 토산물 등
 제과류 베이커리, 전통제과류 등 **소멸음식** 전통식재료를 이용한 요리 및 식재료 등
 슬로푸드의 식재료와 요리로 적합한 품목 가능 전통소멸음식 식자재전시 및 요리시연시 우선 배정
 세계의 거리음식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한국 등 세계 각국의 거리음식

참가계획서 작성방법

1

회사 및 개인 소개자료
소개인쇄홍보물 또는 별도 작성
(일반개요, 주요사업영역 등)

2

전시품목소개자료
상기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전시품목과 판매품목 분리 명기
사진(제품당 2컷이상) 또는
제품인쇄홍보물 자료

3

시식 또는 시연, 행사계획
부스내 요리시식 또는 시연계획
부스내 행사계획, 기념품
제공 계획 등

부스참가비 및 제공내역

국내전시관 부스 (실내, 유료관람구역)

- 독립부스** 면적만 제공(1부스 9 (3m×3m))
 최소 신청면적 : 2부스(18㎡이상)
- 일반부스** 기본부스 + 면적 제공
 (1부스 9㎡(3m×3m) + 부스장치)
 A형 : 9㎡(3m×3m)
 B형 : 18㎡(3m×6m)



제공내역

- 부스구조틀 1식(3mX1m)
- 상부어닝 및 상호간판 1식
- 조명3개(암스포), 콘센트 1개(2구220V)
- 조명용전기 1kW,
- 바닥파이텍스 1식(9)
- 파레트전시대1식

야외 전시/판매 부스 (무료관람구역)

- A형 부스 : 농부장터, 세계의 거리음식
 3m X 3m(9㎡) MQ TENT
- B형 부스 : 먹거리 광장
 5m X 5m(25㎡) MQ TENT



제공내역

- MQ TENT 1식 (3mX3m 또는 5mX5m)
- 상호현수막 1식,
- 형광등2개(40W), 콘센트 1개(1구220V)
- 조명용전기 1kW

* 상기 부스그림은 예시이며, 실제 제공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추후 고지합니다.

참가비안내

구 분	규 격	참 가 비 (VAT별도)	비 고	
독립부스 (실내전시관 한정)	3m X 3m / 9㎡ (최소 2부스 이상 신청가능)	600,000원	국내전시관	
일반부스 (TFS 대형텐트 실내)	A형	3m X 3m / 9㎡	1,000,000원	국내전시관
	B형	3m X 6m / 18㎡	1,600,000원	국내전시관
야외부스 (MQ TENT)	A형	3m X 3m / 9㎡	500,000원	농부장터, 세계의 거리음식
	B형	5m X 5m / 25㎡	800,000원	먹거리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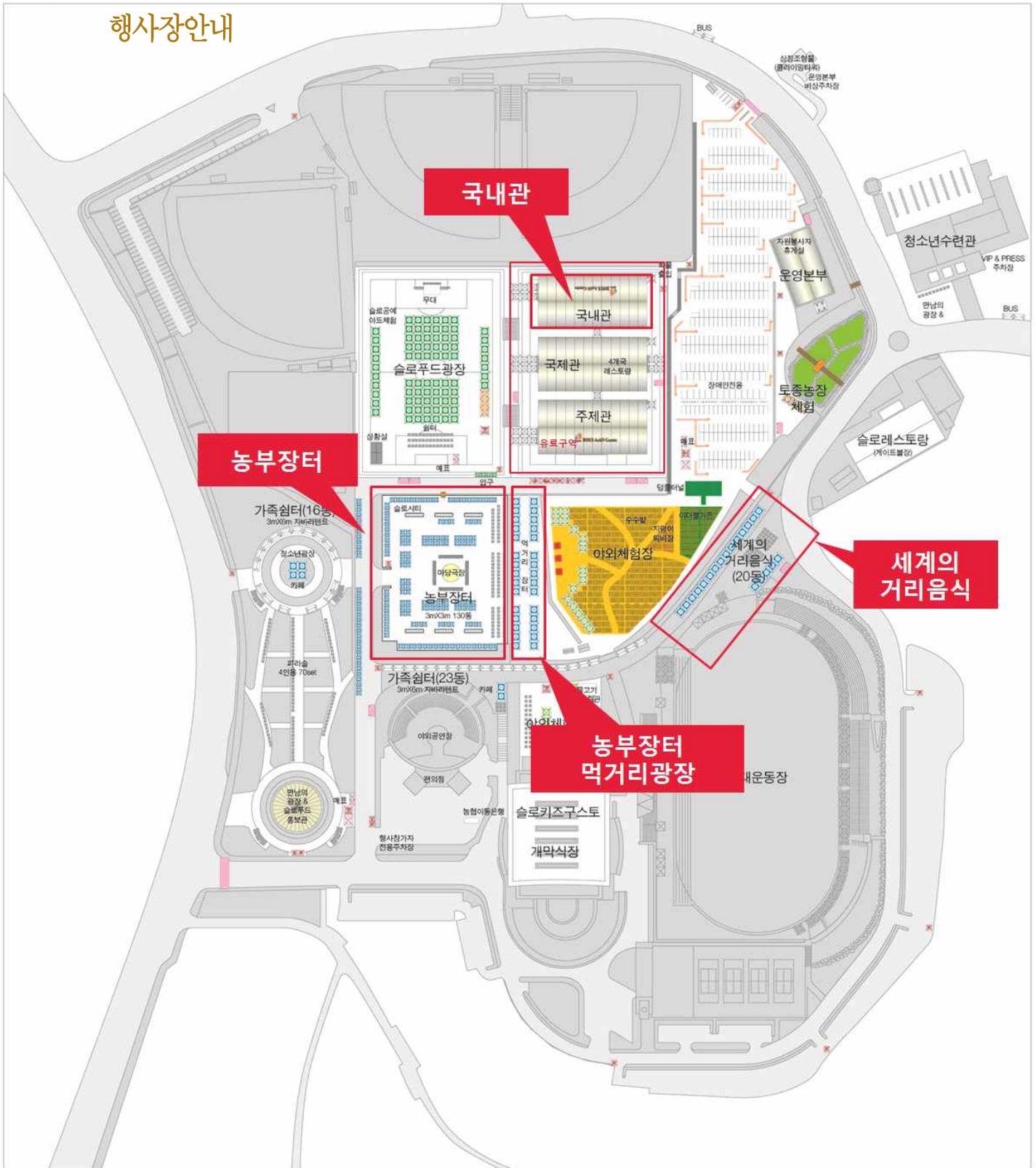
모집절차

- | | | |
|---|--|--|
| <p>1</p> <p>참가신청서 제출
2013년 7월31일 한
(소진시 조기마감)</p> <p>전시품목, 판매품목, 요리시연
등 참가계획서 제출</p> | <p>2</p> <p>참가승인
참가신청 후 10일 이내</p> <p>참가규정 동의
ID (사업자등록번호)확인
PW 생성
참여부스 배정
참가신청 및 필수등록서류 입력</p> | <p>3</p> <p>온라인등록 및
참가비납부
참가확정 승인 후 2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p> <p>사업자등록증 등록 또는 팩스
(FAX_031-556-2442)</p> |
| <p>4</p> <p>부스배정
2013년 8월10일 한</p> <p>참가규정 5조 부스배정원칙에
따라 부스 배정 완료 및 공지</p> | <p>5</p> <p>행사계획내용
및 기술지원신청
2013년 8월31일 한</p> <p>조감도, 평면도 등
도면 제출(독립부스의 경우)
부스내 행사 등 행사계획
전기, 통신, 급배수 등
기술지원 신청 (온라인)</p> | <p>6</p> <p>각종서류신청 완료
참가비/기술지원비 완납
2013년 8월31일 한</p> <p>출입증, 보세신청,
부스상호명 등
각종 신청서류 제출 (온라인)</p> |

참가(승인)규정

1.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은 참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에 준수 사항을 참가자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2.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국내산 농수축산물 또는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가공식품을 전시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유전자조작식품(GMO) 및 화학조미료·화학첨가물을 사용한 제품은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화학조미료·화학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주최측에 사용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시·판매할 수 있다.
4. 제품의 전시·판매, 시식행사 시에는 일회용 용기 사용은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 주최측이 정한 친환경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5. 수입농산물의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배정한다.

행사장안내



본 배치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홈페이지에 고지합니다.

www.AsiOgusto.org

참가안내
문의 및 접수처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
전화 : 070-4335-1386
팩스 : 031-556-2442
이메일 : exhibition@AsiOgusto.org

2013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참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2013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에 부스참가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참가 신청 및 출품을 위한 상세한 기준 및 절차를 안내하여 신청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란 'AsiO Gusto'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개인, 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2. "국제대회"란 '남양주 슬로푸드 국제대회(AsiO Gusto)'를 의미한다.
3. "조직위"란 주최자로서 사단법인 남양주슬로푸드조직위원회를 말한다.
4. "전시관"이란 부스가 배정되는 전시장 및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전시실"이란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 및 부속설비와 배치된 전시품을 말한다.
6. "전시품"이란 슬로푸드 조리음식, 가공음식, 식재료 및 기타 슬로푸드와 관련된 자재, 서적, 연구자료 등을 말한다.
7. "독립부스"란 전시관 벽면을 포함하지 않는 내부공간에 조직위의 승인을 얻은 참가자가 제공된 공간에 한하여 직접 설치하는 부스를 말한다.
8. "일반부스"는 조직위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설치된 규격화된 부스를 말한다.
9. "야외부스"란 'AsiO Gusto' 실내 시설을 제외한 외부 공간에 설치된 규격화된 전시 및 판매 시설(MQ텐트)을 말한다.

【제3조】 참가신청

1. 국제대회 참가를 원하는 개인, 업체 및 단체는 온라인 또는 참가신청서 양식을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남양주 슬로푸드국제대회 조직위원회에 제출 후, 조직위로부터 10일 이내 참가 확정통보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스가 소진되었거나, 대회 개최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참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 독립부스는 1 (1m×1m)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부스와 야외부스는 9m²(3m×3m)를 기준을 한다.
3. 온라인 신청 후 조직위의 승인을 계약행위로 보고, 참가비 납부가 확인 되었을 경우 참가 및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참가비 구분

구분	규격	참가비 (VAT별도)
독립부스	3m X 3m / 9	600,000원
일반부스	A형 3m X 3m / 9m²	1,000,000원
	B형 3m X 6m / 18m²	1,600,000원
야외부스	A형 3m X 3m / 9m²	500,000원
	B형 5m X 5m / 25m²	800,000원

※ 일반부스는 기본구조물, 전기1kw(기본조명포함) 제공됨.
 ※ 독립부스는 바닥공간만 제공됨.

【제4조】 참가비 납부 및 해지조건

1. 전시자는 참가 확정 승인 후 2주 이내에 참가비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개막일 30일 이전(8월 31일)까지 기술지원 소요료를 포함한 잔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신청 마감기한(7월 31일) 이후 참가 확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개막일 30일 전(8월 31일)까지 참가비와 그 외 납부비용을 100% 완납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직위는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일부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5조】 전시면적 배정

1. 참가비용 전액과 함께 접수 신청된 전시자에 대하여 조직위는 할당기준에 따라 전시공간을 배정한다.
2. 조직위는 참가규모, 참가신청순서, 납입순서, 전시품목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배정하고, 전시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조직위는 국제대회 설치기간 이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 전시자가 선택한 전시부스 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 후 변경하여 배정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위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전시자는 조직위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받은 전시 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6조】 필수서류의 제출

1. 전시자는 참가계획서 제출시 회사소개와 제품소개(사진 첨부 가능) 외에도 시식이나 요리에 대한 원자재 조달 및 보관 방법 등 식품조리 및 위생안전에 대한 안전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2. 기술지원신청서는 일반부스를 제외한 독립부스와 야외부스 전시자의 경우에 필수사항이므로 개막일 30일 전(8월 30일)까지 제출한다. (현장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일내에 신청바랍니다.)
3. 독립부스 전시자는 부스설계도면이 포함된 독립부스 작업신청서를 조직위에 개막일 30일 전(8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조직위는 10일 이내 최종 승인여부 조치를 한다.

【제7조】 전시품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국제대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허가되지 않은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조직위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조직위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조직위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5. 조직위는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및 위약금

1. 전시자가 계약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조직위에게 서면으로 취소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본조 1항의 취소통보가 2013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경우에 한해 조직위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부스 임차료를 전액 환불한다. 다만, 8월 1일 이후에 전시자가 신청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른다.
 - ① 개막일 전일부터 1개월 이내 취소한 경우 (9월 1일 이후)
 $(\text{취소부스}/\text{신청부스}) \times (\text{참가비용}) \times 100\%$ 위약금 지불
 - ② 개막일 전일부터 2개월 이내에 취소할 경우 (8월 1일~31일)
 $(\text{취소부스}/\text{신청부스}) \times (\text{참가비용}) \times 50\%$ 위약금 지불
 - ③ 전시자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위약금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한다.
 - ④ 납입된 참가비 및 부스사용료는 위약금으로 차감되며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입한다.
 - ⑤ 대회기간 또는 도중에 스스로 전시를 취소하거나, 포기할 경우 납입된 참가비는 주최자에게 귀속된다.
3. 마감기한(7월 31일) 이후 부스임차료를 납부하고 취소통보할 경우 본조 2항의 규정에 따른다. 단, 기술지원 소요료는 취소일자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한다.
4.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환불하지 않은 참가비는 차기 개최되는 국제대회의 참가경비로 일체 이월되지 않는다.
5. 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부스임차료를 2013년 8월 31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조직위는 일반적으로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6. 전시자가 부스 임차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경우 조직위는 전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모든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 국제대회의 취소 또는 변경

조직위가 국제대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조직위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국제대회가 취소 또는 개최 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조직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 장치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배정된 전시 면적 내에 장치를 진행하고, 참가계획서 상에 명시된 전시품에 대해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만일 설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나 전시장 손상에 대해서는 조직위는 전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조직위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해외 참가자에 대한 통관, 수송 등 편의 제공

1. 식품통관은 대한민국 식품방역법을 적용하고 금지 품목에 대해서는 검역소와 협의, 특별관리 한다.
2. 냉동차량 및 저온차량 활용 요청 시 사전협약에 따라 조직위가 알선한다.
3. 해외반입물품에 대하여 보세물품신고서를 작성하여 참가계획서 제출시 조직위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조직위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대회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해당 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조직위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4조】 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처리

1.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직접 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2. 행사기간 중 발생하는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관할지역의 쓰레기봉투를 구매하여 지정시간 및 장소로 배출하며, 분리수거가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 폐기물 지정장소로 배출한다.

【제15조】 소방규정

1.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조직위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보충규정

1. 조직위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인 세부운영규정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세부운영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조직위의 제정하는 세부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한 조직위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쟁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조직위의 관할지역 법원으로 한다.

